

영등포구의회  
제150회 2차정례회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』

# 檢 討 報 告 書

2009. 12. 3.



行 政 委 員 會

( 專 門 委 員 )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# 檢 討 報 告 書

전문위원 권오운입니다.

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세 감면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』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.

## ■ 개정이유

- 행정안전부의 조례 표준안이 2009년 10월 1일 서울특별시로부터 이첩·시달되어 실효성 없는 감면조항의 폐지 등 제도운용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·개선하고자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세 감면 조례」를 개정하고자 함.

## ■ 주요내용

- 실효성 없는 감면조항의 폐지
  - 안 제4조의2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해 재산세 25% 경감 폐지
  - 안 제16조 물류시설운영업 중 창고업용 직접 사용 토지에 대한 재산세 50% 경감 폐지
  - 안 제17조 전쟁기념사업회가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및 사업소세, 사업종사 종업원 급여에 대한 사업소세 면제 폐지

● **관련법령 인용조문 개정사항 반영**

- 안 제2조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관련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반영

● **평생교육시설 감면대상 중 일부 정비(안 제5조)**

- 제2호 「한국노동교육원법」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노동교육원 제외
- 제3호 국토해양부의 운수연수원 설립계획에 따라 설립된 운수연수원 제외
- 제4호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사업으로 하여 행정관청의 인·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평생교육시설 제외

● **농협중앙회 감면율 조정**

- 안 제7조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은 100분의 75로 한다. 을 삭제하고 지방세법상 경감율 100분의 50을 적용

● **감면조례 중 주택 범위적용 명확화**

- 안 제11조와 안 제14조 "주택"을 "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"로 변경하여 범위를 명확히 함

● **신용보증재단 감면대상 부동산 범위 명확화**

- 안 제15조 "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"을 "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(임대용 부동산을 제외한다)로 하여 신용보증재단 업무 범위에 대한 논란이 있어 임대용 부동산 제외 명시 함

● **지방세법 개정사항 반영**

- 안 제18조 「지방세법」 제18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를 「지방세법」 제188조제1항제3호나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변경

## ● 사치성재산 감면배제규정 정비

- 안 제10조, 제12조, 제15조, 제16조, 제23조

“ 「지방세법」 제112조제2항에 의한 사치성재산의 감면 제외를 개별적으로 규정하던 것”을 “ 「지방세법」 제112조 제2항에 의한 사치성재산에 대한 일괄 감면배제 규정을 안 제25조 보칙에 신설함”

## ■ 검토의견

●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조례 표준안이 2009년 10월 1일 서울특별시로부터 이첩·시달되어 실효성 없는 감면조항의 폐지 등 제도운용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·개선하고자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세 감면 조례」를 개정 하려는 것으로

●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

- 안 제2조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88조의4에 자활용사춘 관련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반영하고
- 현행 조례 제4조의2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위한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은 2009년 지방세법으로 이관 예정으로 폐지하고,
- 안 제5조 한국노동교육원, 운수연수원, 비영리 평생교육시설은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감면목적상 실효성이 미미하여 감면 대상에서 제외
- 현행 조례 제7조2 사업용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은 100분의 75로 한다. 을 삭제하고 지방세법상 경감율 100분의 50을 적용하였고
- 안 제11조와 안 제14조는 주택에 대한 범위를 명확히 하였고

- 안 제15조 신용보증재단 감면대상 부동산 범위를 명확화 하고
  - 현행 조례 제16조 물류시설운영업 중 창고업용 토지는 수익 사업용 부동산으로 경감대상에서 제외, 현행 조례 제17조 전쟁기념사업회 목적사업용 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은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고
  - 안 제18조는 지방세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
  - 안 제10조, 제12조, 제15조, 제16조, 제23조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공통적인 사치성재산에 대한 감면배제를 안 제25조 보칙에 일괄 규정하였습니다.
- 본 조례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행정안전부에서 마련한 구세감면 조례 표준안을 그대로 수용한 조례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.

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

2009. 12. 3.

보고자 : 권 오 운

# 관 계 법 령

## ■ 지방세법

제7조 (공익등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) ①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과세를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②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때에는 불균일과세를 할 수 있다.

제9조 (과세면제등을 위한 조례) [제7조](#) 및 [제8조](#)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정하여야 한다.

〈개정 1978.12.6, 1998.12.31, 2008.2.29〉